

제 2013-5 호

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·거주불명등록 공고

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·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3년 9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년월일	주 소	지연신고사항
김 * *	김 * * 1964. 8. 23	속초시 청대로 8, (5/3) 101동 1503호(조양동, 성호아파트)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,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(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)이 처리되며,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장순해, 문의전화 : 033-631-1406)

2013년 8월 28일

조 양 동 장 (인)

